



해운대구



수신 무도학원업 2개소, 체육도장업 101개소, 체력단련장업 97개소
(경유)

제목 코로나19 예방을 집단감염 위험시설 운영제한 조치 안내

1.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중앙사고수습본부-2884호(2020.3.21.)와 관련입니다.
2. 최근 코로나19 집단감염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코로나19감염의 확산을 억제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**체육시설에 대해 앞으로 보름동안 운영을 중단해 줄 것을 강력히 권고**합니다

가. 적용 대상 시설·업종

- 전국 공통 : **체육시설(무도장, 무도학원, 체력단련장, 체육도장 대상)**
- 나. 적용 기간 : 2020년 3월 22일부터 2020년 4월 5일까지 15일간 (연장 가능)

다. 제한 사항 : 위 기간동안 운영중단 권고,
불가피하게 운영할 경우 **시설·업종별 준수사항을 지켜야 함**

라. 법적 근거 :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

- 보건복지부장관,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감염병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, 집회,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

3. 불가피하게 운영할 경우 **시설·업종별 준수사항을 철저히 지키도록 조치해** 주시기 바라며,

□ 체육시설 준수사항

- 유증상 종사자 즉시 퇴근(체온 등 1일 2회 점검해 대장 작성)
- 출입구에서 발열, 호흡기 증상 여부 확인 및 최근 2주 사이 해외여행력이 있는 사람, 발열 또는 호흡기 등 유증상자, 고위험군 출입 금지(대장 작성)
- 출입구 및 시설 내 각처에 손 소독제 비치
- 최소 2회/일 이상 시설 소독 및 환기 실시(일시·관리자 확인 포함 대장 작성)
* 문 손잡이, 난간 등 특히 손이 자주 닿는 장소 및 물건
- 체육지도자, 강습자 마스크 착용
- 운동복, 수건, 운동장비(개인별 휴대가능용품) 등 공용물품 제공 금지
- 시설 내 단체 식사 제공 금지
- 탈의실(락커룸), 샤워실, 대기실 소독 철저 및 적정 인원 사용 관리
* 일일 소독 대장에 함께 작성해 관리
- 운동기구를 이용할 경우 사용자 간 최소 1~2m 이상 유지
* 운동기구 : 러닝머신, 벤치프레스 등 고정 운동 기구
- 밀폐된 장소에서 다수를 대상으로 한 운동 프로그램 및 강습(줌바댄스 등) 금지
- 감염관리 책임자 지정 및 출입자 명단(성명, 전화번호 필수) 작성·관리

4. 지자체의 조치사항

☞ **안내 → 준수사항 이행여부 현장점검 → 위반시 집회·집합금지 행정명령 → 벌칙 부과 등 조치**

- 해당 시설에 대해 15일 간 운영 중단, 준수사항, 위반시 벌칙 등 **안내**
- 운영여부, 기준 준수여부 등 **현장점검** 실시
-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고 운영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**지자체장이 집회·집합 금지 행정명령 실시**
- ☞ 감염병예방방법(제49조제1항제2호)에 의한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의 집회·집합금지명령
- 위반시 감염병예방방법에 따른 처벌(벌금300만원) 및 확진자 발생시 입원·치료비 및 방역비 손해배상(구상권) 청구. 끝.

해운대구



주무관

이현정

생활체육팀장

정미선

소통협력과장

전결 2020. 3. 23.

김유성

협조자

시행 소통협력과-13038

(2020. 3. 23.)

접수

우 48049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중앙로 170(재송동)

/ <http://www.haeundae.go.kr>

전화번호 051-749-4121

팩스번호 051-749-

/ lhj120912@gmail.com

/ 대국민 공개

2030부산월드엑스포 국가사업 확정! 지금부터 시작이다!